

★

문서번호	청소행정과-44990
결재일자	2014. 12. 2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담당	청소행정담당	청소행정과장	행정국장	부구청장
김주영	조성진	류대걸	손정수	12/26 김병환
협조	재활용담당 代이성호			
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대행기간 연장계약 체결



2014. 12.

행 정 국
[청소행정과]
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대행기간 연장계약 체결
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계약기간이 2014.12.31자로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행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·운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계약근거

-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(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 대행)
-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(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사)
-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 제2항
(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)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
(청소행정과-44470, 2014.12.22.)

II 2015년 계약현황

■ 대행업체 현황

업 체 명	대표자	사무소	대행계약기간	최초계약일
철한정화기업(주)	유병순	한천로 594 (석관동)	'15.01.01~'16.12.31(2년)	1992.02.19
강남환경개발(주)	장국웅	한천로80길 19 (석관동)	'15.01.01~'16.12.31(2년)	1993.04.16
(주)태한환경	최재곤	오패산로 23 (하월곡동)	'15.01.01~'16.12.31(2년)	2002.08.01

■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구역

업 체 명	대행구역수	대 행 구 역
철한정화기업(주)	8개동	성북동, 삼선동, 동선동, 돈암1·2동, 안암동, 보문동, 정릉1동
강남환경개발(주)	6개동	종암동, 월곡2동, 장위1·2·3동, 석관동
(주)태한환경	6개동	정릉2·3·4동, 길음1·2동, 월곡1동

■ 재활용품 수집·운반 대행구역

업 체 명	대행구역수	대 행 구 역
철한정화기업(주)	3개동	삼선동, 안암동, 보문동
강남환경개발(주)	2개동	월곡2동, 석관동
(주)태한환경	4개동	정릉2동, 정릉4동, 길음1동, 길음2동

■ 동별 수거요일

업체명	생활폐기물(일반·음식물쓰레기), 재활용품 수거요일			
	월·수·금		화·목·일(토)	
철한정화기업(주)	성북동, 돈암1·2동, 보문동, 정릉1동		삼선동, 동선동, 안암동	
강남환경개발(주)	종암동, 월곡2동, 장위1동		장위2동, 장위3동, 석관동	
(주)태한환경	단독/다세대	정릉4동, 길음2동, 월곡1동	단독/다세대	정릉2·3동, 길음1동
	공동주택 (일반)	길음1·2동, 정릉4동, 월곡1동	공동주택 (일반)	정릉2·3동
	공동/음식점 (음식물)	정릉2동, 길음1·2동	공동/음식점 (음식물)	정릉3·4동, 월곡1동

※ 태한환경의 경우 일요일 휴무로 토요일에 수거작업 실시

III

계약내용

■ 계약기간 : 2015. 1. 1 ~ 2016. 12. 31 (2년)

■ 업체별 대행구역
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구역 : 현행 대행구역과 동일
- 재활용품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수집·운반 대행구역 : 9개동(6개동 확대)

■ 대행계약서 주요 내용

- 대행구역 내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·운반을 주 3회(일) 이상으로 의무화하고, 간선도로변은 매일(주 5회) 수거
- 생활폐기물, 음식물류폐기물, 재활용품,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기타쓰레기의 수집·운반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규정(계약서 제7조 ~ 제10조)

- 적환장 구·대행업체 공동사용에 따른 관련규정 명시(계약서 제11조 제5항)
 - 대행기간동안 성북구 생활폐기물 적환장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계약종료시 원상복구 후 사용권을 반환하여야 함을 규정
- 정상적으로 수거되지 않을 경우 대행방법 및 비용부담(계약서 제14조)
 - 영업정지를 당하였을 경우
 - 반입정지를 당하였을 경우
 - 대행구역에서 미수거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
 - ※ 관리하는 구역의 폐기물을 즉시 수집·운반하거나, 다른 업체로 하여금 수집·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케 함
- 대행비용의 지급(계약서 제15조)
 - 수집·운반 수수료 규정 명확화
 - 재활용품 수집·운반 대행비용 : 매월 세대 및 사업체당 1,150원으로 하며, 매월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대행업체에 지급
 -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수집·운반 대행비용 : 특수규격봉투 판매수수료
-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반영
 - 근로조건 이행확약서(퇴직금,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,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,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) 내용 등을 대행계약서에 반영
- 재무회계의 객관성 확보(계약서 제20조)
 - 필요시 결산보고서(재무제표, 손익계산서 등) 제출 협조 의무화
 - 구 선정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(문제점 발견시 페널티 부여)
- 폐기물 수집·운반업체 준수지침
 - 대민봉사자세, 인력 및 장비관리, 작업관리, 청소구역내의 순찰
 - 부당요금 징수자에 대한 조치, 정당한 행정지시 불응시의 제재 등
- 의무사항 및 책임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부과(계약서 제21조 제5항)
 - 계약서상의 의무사항과 책임 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건당 1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

- **대행계약 해지 및 구역축소(계약서 제24조 제1항)**
 -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관련법을 위반하였을 때
 - 계약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
 -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, 폐기물 수집·운반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
- **폐기물처리 제비용 강제이행과 파업, 파산 등에 대비하여 청소책임보증금 예치(전년도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/30)**
 - 파업·반입정지 등으로 수집·운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
 - 영업정지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
 - 책임 의무를 해태, 지연, 기피하여 구청 또는 제3자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
 - 폐기물처리 제비용, 음식물류폐기물의 반입수수료 체납액이 3회 이상 독촉후에도 납부되지 않을 경우

※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예치보증금을 대집행하여 사용
- **경쟁입찰 동의 각서 징구**
 - 계약기간 만료 후 경쟁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할 경우 이에 동의한다는 각서 징구(입찰참가 자격은 부여)

■ 2014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

- 계약서상 “갑”과 “을”의 명칭을 각각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로 변경
- 특수규격봉투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명칭 변경
 -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기타쓰레기(불연성 생활폐기물 등)
- 음식물류폐기물의 운송량 계근 협조 의무화(계약서 제8조 제6항)
 - 민간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산정 및 대행업체 운송료 지원에 있어 기준이 되는 반입량의 객관적 검증 목적
- 제작비 부과 면제 방침에 따라 관련조항 수정
 - 제작비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, 향후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인상시 폐기물 처리비용 충당을 위한 반입수수료 징수 근거조항 마련(계약서 제17조)
 - 제작비 부과 면제로 늘어나는 수입을 종사자 임금인상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서약하는 이행각서 징구(붙임 7) 및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매월 임금지급 내역을 구청에 제출(계약서 제19조 제4항)

■ 대행업체별 계약서류를 제출받아 2014.12.31까지 계약완료

■ 계약 관련서류

- 법인 인감증명서 1부
- 법인 등기부등본 1부
-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(계약서 제25조)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계획서 1부

붙임 : 1.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계약서(안) 1부.
2. 업체별 대행구역 1부.
3.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수료 등 1부.
4. 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준수지침 1부.
5.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.
6. 경쟁입찰동의 각서 1부.
7. 제작비 부과 면제 관련 이행각서 1부. 끝.